연세우주생명과학연구소 규정

제정일: 2018.08.29.
담당부서: 우주생명과학연구소(033-760-2244)

제1조(목적) 유인 우주탐사시대를 맞이하여 우주방사선, 마이크로중력 등 극한 환경을 활용한 의생명과학 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연세우주생명과학연구소(Yonsei Institute of Spae Bioscience)'(이하 "연구소"라 함)을 설립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주환경에 대한 생체 반응 및 적응 연구
2. 우주환경 대응 생물소재 탐색 연구
3. 우주기술 실용화 사업
4. 산 · 학 · 연 연구체계 확보.
5. 전문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6. 기타 연구소의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팀 사업 지원.

제3조(조직) 본 연구소에는 소장, 부소장, 총괄부, 학술부, 교외협력부, 자문위원단 등을 둔다. 학술부는 우주환경에 대한 생체 반응 및 적응 연구, 기능성 생물소재 연구, 우주기술 실용화 연구 관련 팀워크를 구성된다.

제4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는 7명 이상의 상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연구원은 전임교원 중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수행 능력의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③ 본 연구소에서는 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한 전문가를 객원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아래 제 6조) 협의를 통해 소장이 위촉한다. 또한,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수행을 전담하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④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Associate researcher)과 연구보조원(Research assistant)를 둘 수 있다. 연구원은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⑤ 각 연구원의 자격과 임기는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⑥ 자문위원은 당 연구소의 연구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외 우주 분야 전문가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 1인

2. 부소장 : 1인
3. 자문위원 : 5인 이상
4. 감사 : 1인
5. 부장 : 3인 (총괄, 학술, 교외협력)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소장은 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업무 및 회계 감사를 관장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각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연구소의 총괄기획, 학술활동 그리고 교내외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부소장, 부장, 감사를 포함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단 본부 행정기관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 2회 이상의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위원들의 5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연구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2. 내규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상임연구원, 연구교수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보고) 소장은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한다.
1. 연구소 운영 보고서(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 이듬 해 3월 말까지 보고함.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이듬 해 3월 말까지 보고함.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함.
4. 연구계약체결 현황,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업적

: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함.

제8조(재정) ① 본 연구소 재정은 연구처의 각종 연구지원금, 보조금 및 찬조금,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위탁연구비,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규정안: 연세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안

가. 제정 사유

- 원주캠퍼스 부속기관인 인재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1) 인재개발원 목적,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2) 인재개발원 운영위원회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3) 대학 진로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라.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정 전문

연세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안

제정일: 2018.08.29
담당부서: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센터(033-760-288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인재개발원/대학일자리사업단(영문명: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재원은 대학 내 진로지도 업무를 총괄하며, 진로 및 취업, 창업 교육 및 현장실습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창업 관련 교육지원: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운영
2. 진로상담: 1:1취업상담, 멘토교수제 등 학생 진로취업상담에 관한 업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인재 추천
4. 교내·외 연계 교육프로그램 구축
5. 현장실습(인턴십) 및 재학생 직무체험
6. 졸업생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연구
7. 그 밖에 진로 및 취·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인재원에는 원장과 전담직원 및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원주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재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직원의 임명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직원 인사 관련 규정 및 노사 합의 사항을 준용한다.
⑤ 인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
1. 인력개발센터
2. 대학일자리센터
3. 현장실습지원센터
4. 창업·스마트랩센터
5. IPP사업단
6. L2M교육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인재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창업·스마트랩센터장, IPP사업단장, L2M교육실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인재원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원 운영의 기본계획
2.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총괄 관리와 협의 조정
3. 규정의 개정과 폐지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추천 채용자 선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대학진로지도위원회) ① 대학의 진로지도종합계획 수립과 진로지도의 전략적인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진로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진로지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 연구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주부총장으로 하며, 대학진로지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인재개발원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학부교육원장 및 각 대학 학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대학진로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취·창업 원스톱서비스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3. 현장실습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기관, 기업체 등 취·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진로지도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대학진로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진로지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인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원주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제8조(시행세칙) 인재원 소속 센터의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규정안: 머레이사회참여센터 규정안

가. 제정 사유

- 원주학생복지처 산하 머레이사회참여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1) 목적, 기능, 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2) 조직, 운영위원회(안 제4조, 제5조)
3) 교과목 운영(안 제6조)
4) 활동지원(안 제7조)

다.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라.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정 전문

머레이사회참여센터 규정안

제정일: 2018.08.29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머레이사회참여센터(03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류 공동체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대학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 산하 머레이사회참여센터(영문명 : Center for Murray Community Engagement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사회봉사교과목 운영을 포함한 사회참여 교육과 대학의 구성원(학생, 교직원, 동문 등)이 시행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관리 및 환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업무) 센터의 업무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 봉사와 참여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사회 봉사와 참여 프로그램 개발
③ 사회봉사 교과목 관리
④ 대외기관 연계 업무 운영

⑤ 학교 주관 봉사활동의 통계, 취합 및 봉사확인서 발급
⑥ 기타 사회 봉사와 참여 업무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머레이사회참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원주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에 운영위원회와 머레이봉사단을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 사회 봉사 와 참여 활동의 발전방향 기획
2. 사회봉사의 질 관리 및 환류
3.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 센터장
2. 당연직 위원 :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학부교육원장
3. 임명직 위원 : 센터장이 추천하는 교내ㆍ외전문가 3인 이내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은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운영위원회는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과목 운영)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연세대학교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전공연계봉사는 대학 및 학부(과)에서 주관한다.
③ 교과목의 활동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① 사회 봉사와 참여 실적이 우수한 대학, 학부(과), 동아리, 학생 및 교직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학교 구성원(대학생, 교직원, 동문 등)이 사회 봉사와 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을 지원한다.
③ 교내ㆍ외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머레이봉사단(학생, 교직원)을 구성하고 행ㆍ재정을 지원한다.

제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원주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원주캠퍼스 사회봉사 운영 내규는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규정안: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운영 내규안

가. 제정 사유

- 원주시와 위탁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1) 목적, 기능(안 제1조, 제2조)
2) 구성원 등(안 제3조)
3)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안 제4조, 제5조)
4) 재원, 운영 등(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다.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라.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정 전문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운영 내규안

제정일: 2018.08.29
담당부서: 사회교육개발원 장애아동체력증진실(033-760-2861)

제1조(목적) 본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장애 아동 운동기능 및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장애아동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이하 “증진실”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본 증진실은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관장한다.
② 증진실에는 책임교수와 직원을 두고 책임교수가 증진실의 제반 업무를 추진한다.
③ 증진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3조(구성원, 임용 및 처우) ① 증진실 구성원은 책임교수, 전담직원(학사-석사 소유자) 혹은 교육전문연구원(박사학위 소유자), 전문지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책임교수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 하고 증진실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③ 전담직원은 증진실의 행정업무와 체력증진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며, 채용 기준 및 처우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교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문지도자는 이용자의 체력증진 교육 및 훈련, 체력평가, 데이터 관리, 체력관리를 위한 가정 프로그램 교육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주당 9시간(540분) 이하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박사 대학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 운영한다.
⑤ 전담직원 및 전문지도자는 물리치료 혹은 작업치료 전공자로서 석·박사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 운동지도에 관한 자격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⑥ 학교 자체 부담 또는 원주시 파견으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둔다.
② 위원장은 책임교수로 한다.
③ 위원은 사회교육개발원장, 원주시청 사회복지 담당계장, 부모대표와 책임교수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며, 추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정기회의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경영, 의료, 법률, 체육, 회계 등 전문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책임교수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재원) 증진실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2. 학교지원금 (현물)
3. 이용료 (현금)
4. 기타 수입(수익금): 후원금, 기부금

제7조(예산과 결산 보고) 협약서에 의거하여 매년 말까지 예산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원주시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원주시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9조(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며, 국가공휴일과 휴일(토,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1회(1교시) 체력증진 활동은 30분으로 한다.
② 체력증진 활동은 직원 1인을 기준으로 1일 8회(교시), 주40회(교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 이용시간이 주40회(교시) 이내일 경우 직원이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④ 총 이용시간이 주40회(교시)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따라 외부 전문지도자(석/박사과정 대학원생)를 배치하여 체력증진활동을 진행한다.
⑤ 기본 체력증진 활동은 1회(교시) 30분 동안, 장애아동 웰니스와 피트니스 및 운동기구를 이용한 체력증진 운동교육프로그램운영, 부모운동교육을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으로

개별 지정시간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⑥ 이용자는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도우미의 보호와 직원 지위·감독 하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선정) ① 이용대상자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신체장애 및 신체적 발달장애로 인해 체력증진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는 자”로 한정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접수기간에 신청한 순서대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기간은 1년 이내(1월-12월)로 정한다.
④ 결원 발생 시 대기자 중 우선 선발하며, 중도접수자는 이용기간을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1:1 운동지도와 피트니스 이용으로 수납한다.(1:1운동지도는 회당 10,000원, 피트니스는 회당 7,500원)
② 이용료 납부는 이용 시작 월 5일전까지 계좌이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월 1회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한다.
②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4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한다.

제15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원주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 및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규정안: 원주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안

가. 개정 사유

-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1) 정기회의를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
2) 보고 의무 주체를 '간사'인 중의적 표현에서 '행정간사'로 변경함(안 제11조)
3) 총장에서 원주부총장으로 오자(誤字) 정정(안 제11조)

다.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라.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⑤ (생 략)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규심의 안건이 없을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⑤ (생 략)
제8조(간사) ① (생 략) ② 전문간사는 아래와 같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사면제의 판정을 담당한다. 2.~3. (생 략) 4. 정규심사 및 신속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심사 안건의 예비심사 위원을 배정한다. 5.~6. (생 략) ③ (생 략)	**제8조(간사)** ① (생 략) ② 전문간사는 아래와 같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사면제의 판정을 담당할 수 있다. 2.~3. (생 략) 4. 정규심사 및 신속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심사 안건의 예비심사 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5.~6. (생 략) ③ (생 략)

현행	개정안
제11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연구에 대한 심의 및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총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행정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연구에 대한 심의 및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의결과를 원주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원주부총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11조)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바. 규정 전문

원주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3.06.26
개정일: 2018.08.29
담당부서: 원주연구처 연구전략부(033-760-526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YUWIRB: Yonsei University Wonju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란 연구개발, 검사 및 평가를 포함하여 지식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체계적 조사를 말한다.
2.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3. “연구대상자”란 인간 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5.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6. 기타 이 규정 및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제2조에 명시한 정의에 준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원주의료원 제외) 구성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부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2호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등의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3.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③ 위원 전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피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심의에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심의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③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1.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

으로 하고, 정규심의 안건이 없을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책임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표준운영지침서에 의하여 심의한다.
⑤ 위원회는 실시 중인 연구에 대하여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속심의의 주기는 피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원회에서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간사와 행정간사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전문간사는 아래와 같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사면제의 판정을 담당할 수 있다.
2. 규정 및 표준작업지침의 가이드라인 준비, 검토 및 배부를 총괄한다.
3. 연구의 윤리와 연관된 최신의 쟁점 및 최신의 문헌에 대해 정보를 갱신하여 위원들에게 제공한다.
4. 정규심사 및 신속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심사 안건의 예비심사 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위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6. 전문간사는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간사에게 업무를 배분 및 부여할 수 있다.
③ 행정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련된 행정업무와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자문위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고) ① 행정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연구에 대한 심의 및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의결과를 원주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원주부총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11조)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규정안: 사회교육개발원 규정안

가. 개정 사유

1) 사회봉사 업무의 이관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사회교육개발원의 약칭 수정(교육원 → 본 원)
3)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학습, 수강료 할인 등)

나. 주요 골자

1) 목적에서 사회봉사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3조)
2)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8조, 제12조)

다.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라.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연세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The Professional and Community Education Center: 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연세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The Professional and Community Education Center: 이하 "본 원"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 교육원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2조(소재)** 본 원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① 본 교육원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따라 일반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② 이 규정은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과 대학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회봉사 및 기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① 본 원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따라 일반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② 이 규정은 평생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①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정규 학위과정의 교육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교외 일반인, 연세대학교 학생, 동문 혹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유료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 일체를 말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들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봉사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업무) ① (생 략) ② 교육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을 시행한다. ③ (생 략) ④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교내외 사회봉사를 위한 연계 업무를 담당한다. ⑤ 기타 대학에서 교육원에 부여한 업무를 시행한다. ⑥ 교육원의 교육 시설 및 공간을 관리한다. 교육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업무)** ① (생 략) ② 본 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을 시행한다. ③ (생 략) <삭 제> ⑤ 평생교육과 체육교육(활동) 시설 및 공간을 관리한다. 교육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⑥ 기타 대학에서 본 원에 부여한 업무를 시행한다.
제7조(조직) ①~② (생 략) ③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생 략)	**제7조(조직)** ①~② (생 략) ③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생 략)
제8조(평생교육강좌의 학습과 등록) ① 교육원의 학습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②~④ (생 략)	**제8조(학습과 등록)** ① 본 원의 학기 운영은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되 각 교육 과정별 특성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12조(수강료 할인) ① (생 략) 1. (생 략) 2. 본교학생에게는 수강료의 20%를 할인해 준다.(단, IT강좌는 제외) 3. (생 략) 4.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에게는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준다.(단, IT강좌는 제외)	**제12조(수강료 할인)** ① (생 략) 1. (생 략) 2. 본교학생에게는 수강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3. (생 략) 4.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 장애인에게는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현행	개정안
5. 2개 이상의 강좌를 동시 수강 시 수강료의 10%를 할인해 준다.(수강료가 더 비싼 1개 강좌에 할인 적용, IT강좌는 제외)	5. 2개 이상의 강좌를 동시 수강 시 수강료 금액이 작은 강좌를 50%를 할인해 준다.
②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
1. 교직원 본인 : 재직증명서 1부	1. 교직원 본인 :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
2. 교직원 직계가족 : 재직증명서 또는 교원증, 직계가족 확인서 1부	2. 교직원 직계가족 :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3.~4. (생 략)	3.~4. (생 략)
5.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 : 국가 유공자 확인증	5.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 : 국가 유공자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신 설>	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장애인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④ (생 략)	④ (생 략)
⑤ 평생스포츠 강좌의 수강료는 할인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삭 제>
제6장 사회봉사	<삭 제>
제27조(기능과 역할) 사회봉사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삭 제>
1. 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2.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캠퍼스 내 대학, 학생회, 동아리, 기관 등 지원	
3. 교내 봉사활동확인서 통합관리	
4. 사회봉사 활성화	
5. 사회봉사교과목 운영	
6. 외부 사회봉사기관 연계	
7. 연세원주봉사상 시상	
제28조(학사관리) 사회봉사교과목에 관한 학사관리는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삭 제>
제29조(기능) ① 교육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기능)** ① 본 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생 략)
1.~4. (생 략)	1.~4. (생 략)

현행	개정안
5. 사회봉사 교과목 및 시회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6. 교육원의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본 원의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기타 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2조(재원 및 회계) ① 교육원의 재원은 수강생의 수강료와 대학의 지원금, 위탁교육비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2조(재원 및 회계)** ① 본 원의 재원은 수강생의 수강료와 대학의 지원금, 위탁교육비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 원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생 략)
제33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생 략)	**제33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생 략)
② 교육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생 략)
	부칙
	(6)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 규정 전문

사회교육개발원 규정

제정일: 2011.07.14
개정일: 2018.08.29
담당부서: 사회교육개발원 행정팀(033-760-270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연세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The Professional and Community Education Center: 이하 "본 원"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원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① 본 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따라 일반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② 이 규정은 평생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삭제>

제2장 업무 및 조직

제5조(업무) ①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평생교육과정의 학사와 수강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본 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을 시행한다.
③ 대학의 졸업인증을 위한 정보인증 업무를 주관한다.
④ <삭제>
⑤ 평생교육과 체육교육(활동) 시설 및 공간을 관리한다. 교육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⑥ 기타 대학에서 본 원에 부여한 업무를 시행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조직) ① 본 원에는 원장, 부원장, 전담직원 및 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책임교수 및 교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원주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직원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장 평생교육과정

제8조(학습과 등록) ① 본 원의 학기 운영은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되 각 교육 과정별 특성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강좌 접수자는 소정기간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의 수강인원은 교육과정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④ 최소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교육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

제9조(학습연한) 본 원의 학습연한은 교육과정의 성격 및 구성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지역사회의 발전과 일반사회인의 평생교육 및 자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와 대학의 졸업인증을 위한 정보인증대체인정 강좌를 개설한다.

제11조(학습비) ① 본 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수강료 할인) ① 평생교육 강좌 수강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할인하여 준다.
1.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에게는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2. 본교학생에게는 수강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3. 연세대학교 동문에게는 수강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4.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 장애인에게는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5. 2개 이상의 강좌를 동시 수강 시 수강료 금액이 작은 강좌를 50%를 할인해 준다.
② 각 할인 조건은 타 할인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③ 수강료할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직원 본인 :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
2. 교직원 직계가족 :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3. 본교학생 : 학생증
4. 연세대학교 동문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5.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 : 국가 유공자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장애인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④ 위탁받는 강좌의 경우 할인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⑤ <삭제>

제13조(이수과목 및 평가기준) 과정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료증) 각 교육과정에 개설된 강좌를 70% 이상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단, 정보인증대체인정 강좌의 경우는 개설된 강좌를 70%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단, 평생스포츠강좌는 수료증 교부를 제외한다.

제15조(포상과 징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학습생에게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습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삭 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5장 자격증 시험

제24조(자격증 시험기관으로의 자격부여 절차) 자격증 시험 주관기관과 맺은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25조(협약의 방법) 시험주관기관과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6조(응시절차, 응시료 수납 및 반환기준) 응시절차, 응시료 수납 및 반환기준 등은 시험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장 <삭 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7장 운영위원회

제29조(기능) ① 본 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설치, 정원, 학습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보인증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본 원의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사회교육개발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3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의안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의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재정 및 규정류의 관리

제32조(재원 및 회계) ① 본 원의 재원은 수강생의 수강료와 대학의 지원금, 위탁교육비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원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3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본 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정보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의 규정 및 내규는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1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6항,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5항, 제14조,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3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규정안: 원주캠퍼스 사회봉사 운영 내규 폐지안

가. 폐지 사유

- 사회봉사 업무 이관(머레이사회참여센터) 및 머레이사회참여센터 규정 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원주캠퍼스 사회봉사 운영 내규」 폐지

다.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라.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정 전문

원주캠퍼스 사회봉사 운영 내규 폐지안

제정일: 2017.09.08.
담당부서: 사회교육개발원 행정팀(033-760-2708)

제1조(목적) ① 이 내규는 우리학교의 사회봉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학교가 주관하는 사회봉사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리 부서 및 위원회) ① 학교 주관 봉사활동은 각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운영한다.
② 학교주관의 봉사활동의 통계, 취합 및 봉사확인서 발급은 사회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한다.

제4조(사업) 학교 주관 봉사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사회봉사의 행·재정적 지원 및 봉사자 관리
2.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지원
4. 사회봉사활동 지원자 모집, 교육, 홍보 및 기관·단체로의 파견
5. 유관기관과 봉사활동 연계
6. 봉사자 추천
7. 그 밖에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① 학교 주관 사회봉사활동의 중요한 사항을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 주관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회봉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교과목 운영)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연세대학교 ‘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 따라 운영한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 주관부서는 ‘사회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며 담당한다.
③ 전공연계봉사는 대학 및 학부(과)에서 주관한다.

제7조(포상)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대학, 학부(과), 동아리, 개인(지도교수 포함)을 선발하여 포창 및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8조(사회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 구성원(대학생, 교직원, 동문 등)이 사회봉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과목의 활동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내규 개정) 본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